

연구비 온라인 정산(Paperless) 시행계획

(2020. 7. ., 연구관리부)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정부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 시행 후 매뉴얼 개정('20.6.30.)을 통해 정산서류 일체를 전자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- 세종충남대병원 설립이 도래('20. 7. 15.)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연구자들이 온라인 정산(Paperless) 등 대책마련 요구
- 최근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연구자가 비대면 정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

□ 관련근거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2019.3.19.)」 제12조의2 제9항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(2020.6.30.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-622(2018.5.8.)
- 한국연구재단 정산총괄팀-12702(2018.6.8.)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(사후관리팀-1269(2018.6.8.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가R&D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(산업통상자원부 등)에서 종전과 같이 출력물 형태의 영수증 원본 보관 요구
- 세종충남대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 및 연구과제 규모에 행정인력을 전담으로 배치하는데 한계
- 코로나19 관련으로 연구자로부터 최근 월 5건 이상 비대면 서류 제출* 요구민원 접수사례 발생

* 전자메일, 산학융합정보시스템 파일 업로드, 개인메신저 등

□ 추진계획

- 지원기관에서 원본 정산증빙 보관을 강제하지 않는 연구과제*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온라인 정산 시행

* 한국연구재단,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산업체 등 연구용역 및 간접비 지원사업 등

- 세종충남대병원 및 보운캠퍼스 등 외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부터 온라인 정산 우선 시행

※ 연구자가 스캔할 수 없는 경우 종전대로 우편으로 연구비신청 병행

- 전자파일 형태로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또는 별도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항목*에 대하여 연구자가 전자정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

* 국가R&D사업 직접비 5% 이하의 연구활동비 제7호(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.비품의 구입.유지비 및 소액의 소모성 경비)

□ 향후일정

- ('20. 7.) 온라인 정산 관련 시스템 기능 추가 및 업무프로세스* 조정

※ 온라인 결제 선택기능 탑재 완료('20. 7. 2.)

* 온라인 전환 업무: 연구비 일상감사 및 간접비 지원사업 등

- ('20. 7.) 연구비 온라인 정산 시범운영

※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및 세종시 근무 연구자의 연구과제 등

- ('20.12.) 연구비전용앱 도입 등 온라인 정산 고도화

※ 연구비카드 사용 후 부가증빙(거래명세표, 승차권) 촬영 이미지 즉시 등록

- ('21. 2.) 연구비 온라인 정산 전면시행

별첨)

온라인 정산 관련 근거(발췌본)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,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.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

《매뉴얼 52페이지》

◎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,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
-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.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.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

□ 종이영수증 폐지 협조 공문(한국연구재단)

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종이영수증 폐지 협조 요청

1. 최근 정부는 총리 주재 '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5.24.)' 를 통해 정부 예산·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
 - *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, 기획재정부 등에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경우 종이영수증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유권해석함(붙임 참조)
2. 우리 기관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비 집행 증빙을 전자증빙*으로 갈음하고, 종이영수증을 제출받지 않고자 합니다.
 - * 연구비카드 거래정보,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, 연구기관 ERP 전자문서 등
3. 이에,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비 집행 영수증 등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과대학, 학과, 부설 연구소 및 연구부서 등에 즉시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유권해석 및 조치사항 1부. 끝.

한국연구재단이사장



수신자 전국대학교, 전문대학교, 정부출연연구기관,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연구기관